

의안번호	제462호
의결 연월일	2013년 3월 18일 (제318회)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3년 3월 15일

#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2
----------	-----

제안일 : 2013년 3월 15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8대 의회(10. 7. 1)부터 교육청 결산 승인업무를 도의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교육청 관련 용어정비
- 결산검사 참여위원에게 지급한 일비가 지난 '06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명칭도 일비에서 수당으로 변경

## 2. 주요내용

- “도회의의원 및 교육위원의 배우자”를 “의원의 배우자”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5조)
- 결산검사결과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안 제9조)
- 종전의 “일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의 “일비”와 혼동되므로, 용어를 “수당”으로 변경(안 제10조)
- 결산검사 참여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기준을 개정(안 13조 별표 2)
  - 현행 11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당 현실화
-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용어 정비원칙에 따라 조례 용어 정비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5. 참고사항

- 신구조문표 : 별첨
- 비용추계서 : 별첨
- 관계법령 : 별첨
-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 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4조에 따라”로, “결산검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을 “결산검사위원회”으로, “운영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위원회”을 “결산검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으로, “도의회 의원”을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5인 이상 10명 이내”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도의회 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도의회 의장”을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를 “위원으로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64조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회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별표1에 의한”을 “별표1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겸직금지 및 결격)”을 “(겸임금지 및 결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 도 및 교육청”을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으로, “도의회 의원인 위원중”을 “의원인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고시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도회회의 의장이”를 “의장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사업현장확인”을 “사업현장 확인”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위촉기간중”을 “위촉기간 중”으로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한다.

제11조의 제목 “(일비의 계산)”을 “(수당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도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일비를”을 “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간중”을 “검사기간 중”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사항을”을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1> 위촉장란 중 “○○년도”를 “○○○○회계연도”로, “충청북도도의 회의장(인)”을 “충청북도의회의장(인)”으로 한다.

<별표 2> 일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액 수	
	현 행	개 정 안
수 당	110,000원/1일	130,000원/1일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운영 등-----.</p>
<p>제2조(위원의 정수) <u>위원의 정수는</u> <u>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u> 이 경우 <u>도의회 의원은</u> <u>검사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2조(위원의 정수) <u>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u>--충청북도 <u>의회의원(이하 “의원”라고 한다)을</u> <u>5명 이상 10명 이하</u>----- . -----<u>의원</u>-----.</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u>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u> <u>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u> <u>도의회에서</u> <u>선임한다.</u></p> <p>② <u>도의회 의장이</u> <u>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u>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u>운영위원회와</u> <u>협의</u> 하여야 한다.</p> <p>③ <u>도의회는</u>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u>추천된 자 중에서</u> <u>위원을</u> <u>선임</u>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u>제64조의 규정</u>에 의한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u>제2조에 따른</u>---충청북도<u>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p> <p>② <u>의장이</u> <u>위원으로</u> <u>추천할 때에는</u>-----<u>의회운영위원회</u>-----.</p> <p>③-----<u>제2항에 따라</u>-----<u>제64조에 따</u> <u>른다.</u></p>
<p>④ <u>도의회</u>의 <u>의장은</u> <u>선임된</u> <u>위원</u>에 대하여는 <u>별표 1에</u> <u>의한</u> <u>위촉장</u>을 교부 한다.</p>	<p>④ <u>의장</u>-----<u>별표1에</u> <u>따른</u>-----.</p>

현행	개정안
<p>제5조(겸직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u>당해 도 및 교육청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u></p> <p>② <u>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도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u></p>	<p>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  <u>“충청북도(이하 ” 도 “라고 한다)”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 교육청 “이라 한다)-----.</u></p> <p>② -----  -----의원  -----  -----  -----.</p>
<p>제6조(대표위원) ① <u>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두되 도의회 의원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u></p> <p>② (생략)</p> <p>③ <u>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도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6조(대표위원) ① <u>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의원인 위원 중-----.</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u></p>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생략)</p> <p>② 「지방공기업법」 <u>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다.</u></p>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u>제2조에 따라 -----</u>  -----  -----<u>제35조에 따른 -----</u>  -----.</p>

현행	개정안
<p>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설명 또는 <u>사업현장확인</u>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u>없는 한</u>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8조(검사협조) ----- ----- ----- -----<u>사업현장 확인</u>----- -----<u>없으면</u>----- -----.</p>
<p>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 <u>제84조제3항에 따른</u> 검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 -----.</p>
<p>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 위원에게 <u>일비를</u> 지급한다.</p> <p>② <u>일비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u></p>	<p>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 -<u>수당을</u>-----.</p> <p>② <u>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한다.</u></p>
<p>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u>도의회 의원이 아닌</u> 위원이 <u>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u>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u>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u> 이에 포함한다.</p>	<p>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 ----- ----- -----<u>의원</u>----- ----- -----<u>수당을</u>----- -----.</p> <p>② -----<u>검사기간</u> <u>중의</u> -----<u>제12조에</u> <u>따른</u> -----.</p>

현행	개정안												
<p>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u>일비</u>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u>여비지급 기준</u>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u>준한다</u>.</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u>사항</u>을 규칙으로 정한다.</p> <p>[별표 1]</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b>위 축 장</b></p> <p>○ ○ ○</p> <p>귀하를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p> <p>○○년 ○월 ○일 충청북도도의회의장(인)</p> </div>	<p>제13조(지급기준) ----- <u>수당</u> ----- ----- ----- . &lt;단서 삭제&gt;</p> <p>제14조(시행규칙) ----- ----- <u>사항</u>은 ----- ----- .</p> <p>[별표 1]</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b>위 축 장</b></p> <p>○ ○ ○</p> <p>귀하를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p> <p>○○년 ○월 ○일 충청북도도의회의장(인)</p> </div>												
<p>[별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일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000원/1일</td> </tr> <tr> <td>여비</td> <td>「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상 제1호 상당액</td> </tr> </tbody> </table>	구분	액 수	일비	110,000원/1일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상 제1호 상당액	<p>[별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수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00원/1일</td> </tr> <tr> <td>여비</td> <td>「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상 제1호 상당액</td> </tr> </tbody> </table>	구분	액 수	수당	130,000원/1일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상 제1호 상당액
구분	액 수												
일비	110,000원/1일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상 제1호 상당액												
구분	액 수												
수당	130,000원/1일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상 제1호 상당액												

#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매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실시

## 2. 비용 발생 요인

-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수당 및 여비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3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결산검사위원 선임(5명 이상 10명 이내)
- 위촉기간(20일 이내)
- 결산검사 실시

###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3	'14	'15	'16	'17	계
계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결산검사위원 수당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130,000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경비 당초예산 확보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결산검사위원 수당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130,000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재원 조달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도 비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